

##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10월 17일

제안자 : 안치영 의원 등

### 가. 수정이유

- 공공심야약국 지정 관련 문구의 해석에 있어, 도지사의 재량권 과다로 오해 될 소지가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함.

### 나. 수정 주요내용

- 도지사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시,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토록 규정 (안 제3조제1항)

##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공공심야약국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”를 “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#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3조(지정·운영) ① <u>도지사는 심야 시간·공휴일에 충청북도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</u>	제3조(지정·운영) ① <u>도지사는 심야 시간·공휴일에 충청북도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.</u>